

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문화향수 기회의 확대와 지방문화 예술진흥을 위하여 개관하는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한 직제의 신설 등 회관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사업소의 신설에 따른 직제운영 근거를 모법에 맞추어 개정함
(안 제1조)
- 나. 사업소에는 사업소장을 두되, 사업소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.
(안 제2조제2항)
- 다. 사업소(기관)의 명칭과 위치 등 을숙도문화회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함.
(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)
- 라. 문화회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와 소속직원을 통할하도록 하고, 관장의 분장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사무처리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. (안 제11조 내지 제13조)

3. 관련법령 및 조례

- 가. 지방자치법제102조 (행정기구)
- 나. 지방자치법제105조 (사업소)
- 다.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규정 제12조의 3
(사업소 및 출장소)

- 라. 사하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(목적) 및 제2조(국장,실과장의 직급등), 제5조(총무국에 두는과)
- 마.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

4. 검토의견

-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을숙도문화회관 개관에 따른 사업소 운영근거와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정비한 내용으로써
- 문화회관의 명칭과 위치등에 관한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관장의 소관사무와 분장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
- 2002. 7. 7부터 병무업무의 지방병무청 이관으로 총무국장의 사무 분장에 병무업무를 폐지하는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음
- 또한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으로 “구 사업소” 를 신설하는 등 을숙도문화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2002. 7.

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삼림